

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

제정	1973.	7.	1	조례 제 17호
개정	1973.	8.	21	조례 제 89호
개정	1975.	1.	1	조례 제 131호
개정	1975.	1.	15	조례 제 133호
개정	1975.	5.	1	조례 제 146호
개정	1976.	9.	1	조례 제 186호
개정	1977.	11.	15	조례 제 272호
개정	1978.	1.	26	조례 제 283호
개정	1978.	7.	21	조례 제 297호
개정	1978.	11.	18	조례 제 307호
개정	1989.	3.	31	조례 제 332호
개정	1980.	1.	25	조례 제 362호
개정	1980.	6.	30	조례 제 384호
개정	1980.	7.	3	조례 제 393호
개정	1981.	6.	1	조례 제 449호
개정	1982.	6.	9	조례 제 535호
개정	1982.	9.	3	조례 제 558호
개정	1983.	1.	8	조례 제 571호
개정	1988.	5.	12	조례 제 869호
개정	1989.	4.	14	조례 제 933호
개정	1991.	1.	9	조례 제1069호
개정	1996.	7.	18	조례 제1479호
전부개정	1998.	9.	15	조례 제1588호
전부개정	2008.	3.	21	조례 제2086호
일부개정	2008.	6.	5	조례 제2098호
전부개정	2011.	9.	20	조례 제2342호
일부개정	2017.	3.	6	조례 제2801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25.	7.	31.	조례 제378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3. 6>
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다만,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.

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,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7. 3. 6>

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 시장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

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. <개정 2017. 3. 6, 2025. 7. 31>

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 <개정 2017. 3. 6>

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17. 3. 6, 2025. 7. 31>

제5조(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)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25. 7. 31>

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5. 7. 31>

1.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 없이 나누는 행위

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,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. <개정 2025. 7. 31>

[본조신설 2017. 3. 6]

제6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따르되,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개정 2017. 3. 6, 2025. 7. 31>

1.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2. 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 장관”은 각각 “시장”으로 본다.
3.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4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”는 “「안양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」 제3조”로 “같은 규정 별표 1”은 “같은 규칙 별표 1”로 본다.
4의2.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.
5. 영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6.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7. 영 제29조제1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

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8.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은 “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임용령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, “일반임기제 공무원”은 “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”, “전문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[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. 3. 6]

부칙 <2011. 9. 20 조례 제2342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3. 6 조례 제280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. 7. 31 조례 제378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

[별표] 삭제 <2017. 3. 6>